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7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이상헌·김진표·이해식

유정주 • 유동수 • 한병도

이용호 · 안민석 · 권칠승

김민석 · 신정훈 · 조응천

박재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

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 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 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라한다)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 1의2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1. 개인이 직접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하 "개인 제작 게임물"이라 하다)
 - 2.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임물

- 3. 그 밖에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한 자(이하 "등급분류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 용 및 등급 관련 자료, 등급분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이를 등급분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자는 즉시 이에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자가 제6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및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1(등급분류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21조의10제1항의 등급분류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 를 하려는 자

제45조제1호의3 중 "제21조의8제4항"을 "제21조의8제4항 또는 제21조의10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등급분류) ① ~ ⑨ (생	제21조(등급분류) ① ~ ⑨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⑩ 위원회는 제21조의10에 따
	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
	여 시행할 수 있다.
<u> <신 설></u>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
	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
	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등급분류 시스템"
	라 한다)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
	조제1의2호 각 목에 해당하거
	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
	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개인이 직접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하 "개인 제작 게
	<u>임물"이라 한다)</u>

- 2.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임물
- 3. 그 밖에 사행성, 폭력성, 선 정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 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게임물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 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한 자(이하 "등급분류자"라 한다) 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 임물의 주요 내용 및 등급 관 런 자료, 등급분류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 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 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 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등급분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자 자는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 분류자가 제6항의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8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및 직권 등급분 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등급분류자의 준수사 항)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신 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등급분류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1. 제21조의10제1항의 등급분류</u>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
련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
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u>.</u>
<u>.</u>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
0제1항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3. ~ 11. (생략)
- ② (생략)
- 제4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②・③ (생략)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u>제21조의8제4항</u>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
0제1항
3.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자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21조의8제4항 또는 제2</u>
1조의10제5항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